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1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

#### 가.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이 현안업무로 대두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향상과 내실있는 일자리 발굴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기구화하고 노인복지과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한시기구의 정식기구화 : 일자리추진단 □ 일자리정책과
- 부서 명칭변경 : 노인복지과 □ 어르신복지과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주요 현안업무로 부각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내실있는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기구화하고 노인복지과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진단을 정식기구화하고, 우리구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 정식기구화 하고 부서 명칭을 “일자리정책과”로 함.
- 안 제7조에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함.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1 호
----------	---------

제출연월일 : 2013.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이 현안업무로 대두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향상과 내실있는 일자리 발굴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기구화하고 노인복지과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의 정식기구화 : 일자리추진단 ➡ 일자리정책과
- 나. 부서 명칭변경 : 노인복지과 ➡ 어르신복지과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및제2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심사대상 사무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세무과, 부과과,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을 “일자리정책과, 세무과, 부과과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와”를 “어르신복지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어르신복지담당주사”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재정국)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u>세무과</u>, <u>부과과</u>, <u>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u> 둔다.</p> <p>② (생   략)</p> <p>1. ~ 14. (생   략)</p>	<p>제6조(재정국) ① ----- -----<u>일자리정책과</u>, <u>세무과</u>, <u>부과과</u>를---.</p> <p>② (현행과 같음)</p> <p>1. ~ 14. (현행과 같음)</p>
<p>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u>노인복지과</u>, <u>청소과</u>, <u>환경과</u>를 둔다.</p> <p>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   략)</p> <p>4. <u>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u> 관한 사항</p> <p>5. ~ 15. (생   략)</p>	<p>제7조(복지국) ① ----- ----- <u>어르신복지과</u>, -----.</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어르신복지와</u> -----</p> <p>5. ~ 15. (현행과 같음)</p>